



승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 제정 2001년 04월 28일
- 1차 개정 2002년 09월 13일
- 2차 개정 2003년 03월 29일
- 3차 개정 2004년 01월 09일
- 4차 개정 2004년 10월 05일
- 5차 개정 2006년 12월 18일
- 6차 개정 2009년 07월 22일
- 7차 개정 2010년 11월 08일
- 8차 개정 2013년 01월 15일
- 9차 개정 2015년 02월 05일
- 10차 개정 2018년 04월 04일
- 11차 개정 2022년 02월 19일
- 12차 개정 2023년 03월 04일

전문

승실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 총학생회(이하"본회")는 지구촌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과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인 양성의 수련 전당으로서 열린 학습사회를 선도하여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의 본교 발전을 지향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며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여 회원 개개인의 발전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승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내에서 회원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여 창의적인 학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교 발전과 회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승실사이버대학교 교내에 둔다.

제4조 (기구) 본회는 학생총회(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학과 학생회, 지역 학생회, 학생단체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2.2.19.)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승실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과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회비 미납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 회칙,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선거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18.04.04. 개정)
- ④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각 기구의 회의에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⑥ 회원은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 ⑦ 회원은 본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재산 등)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 제적, 자퇴, 휴학, 졸업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품 및 기타 총학생회 재산에 대하여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018.04.04. 신설)

제8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02월 01일부터 익년도 0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학교, 재단법인과의 협의) 본회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의 관련 부, 처 또는 재단법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학교 또는 재단법인과 협의, 조절할 수 있다.

- ①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② 학생 권익에 밀접히 관련된 사항
- ③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투표로 갈음한다.(2018.04.04 개정)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부재중에는 부총학생회장(수석부회장)이 임시 대행하며, 다음 순위는 사무 총괄 부회장 또는 기획총괄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부분 개정 2022.2.19.)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위원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13조 (결정사항)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총학생회장 선출
- ② 회원 전체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 ③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 ④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신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⑤ 운영위원, 집행위원 탄핵에 관한 사항
- ⑥ 본회의 자치기구 설치 및 자치기구장 탄핵 관한 사항
- ⑦ 본회 회칙 제정 및 개정
- ⑧ 총학생회장이 직접 발의한 안건,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이 발의한 안건, 총 회원 1/10 이상의 온라인 연서(댓글)에 의한 안건 (2018.04.04. 신설)

제14조 (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요구에 한하여서 이를 의장이 소집하며 장소는 웹상 또는 의장이 정한 지정 장소에서 개최한다.

- ① 본회 운영위원의 2/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하여 전체 회원의 1/10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한 경우.
- ④ 총학생회장(학생총회 의장)은 상기 각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일을 포함한 10일 이내에 학생총회 안건과 투표 일정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총회 개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총학생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규 선거는 선거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④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회 결과에 승복하며 결정 사안에 대해 준수 의무를 진다.

제3장 총학생회장

제16조 (의무)

- ① 총학생회장은 전문 및 총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대내, 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총학생회장은 본회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⑤ 총학생회장은 직무수행 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02월 01일부터 익년도 0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8조 (신분보장)

- ①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 의한 탄핵 또는 불신임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은 보장된다.(단, 학칙에 위배되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때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불신임 및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 또는 불신임 의결이 확정된 때에 즉시 해임되며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당기 집행위원 전원은 일괄 사퇴한다.
- ④ 탄핵, 불신임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발의와 학생총회 승인의 절차를 통해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 ④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 ⑤ 총학생회장은 본교의 평의원회 당연직 의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1인이 참석한다.
단, 평의원회 회칙 개정 후 부총학생회장(수석부회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22.2.19.)
- ⑥ 총학생회장은 부회장, 집행위원회 임원, 장학위원장, 학술위원장 임명, 해임 권한을 갖는다
(2018.04.04)
- ⑦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구와 부서를 추가로 증설, 운영할 수 있다.
- ⑧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본회의 소집과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⑨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고한다.
- ⑩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절차에 준해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
- ⑪ 총학생회장은 본회와 학교 발전을 위한 상설 또는 비상설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 ⑫ 총학생회장 필요시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확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018.04.04.)

제20조 (부총학생회장)

-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그 수는 업무를 고려하여 총 3인을 넘지 아니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적극 보좌하여야 하며 총학생회장 부재중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집행위원회

제21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상임 집행 및 의결 기구이다. (2018.04.04)

제22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총(부) 학생회장과 집행기구의 임원(국, 차장, 팀장)으로 구성한다.
- ②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사무국, 재무국, 기획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조직국, 법사윤리국, 행사국 등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기구와 부서를 통합, 추가 증설 운영할 수 있다. (2018.04.04.)
- ③ 각 집행기구의 국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학생회장의 재가를 얻어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④ 집행위원회의 각 국장, 차장, 팀장은 본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총학생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직속 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무 종료 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018.04.04.)
- ⑥ 특별위원회 국장은 구성된 기간 동안 집행위원 및 운영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2018.04.04.)

제23조 (권한 및 의무)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① 본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발의권
- ② 회원의 교내, 외 활동과 복지에 관하여 학교와 재단법인에 의견 개진 권한
- ③ 총학생회 소집 요구 권
- ④ 본회의 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⑤ 본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
- ⑥ 본회의 회계 및 결산 보고서 작성 의무
- ⑦ 본회의 회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사항 발의권
- ⑧ 본회의 자치기구의 설치 운영 및 구조조정 심의권
- ⑨ 본회의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의무
- ⑩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⑪ 차기 집행위원회에 업무 인수 의무
- ⑫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인 회장, 부회장 3인, 각 국별 국장의 활동비 및 관공비 명목을 없애고 업무추진비 또는 예비비에서 지급한다. 지출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다. 단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지출경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22.2.19. 신설)

제24조 (집행위원회 직무 2018.04.04)

-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의, 확대회의 등 회무를 관장하며 의장으로서 모든 안건 발의를 총괄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관리 감독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의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학생회의 운영조직을 관리하며, 총학생회장이 지시한 사업 및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총장(총괄사무장)은 집행위원회의 또는 확대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와 협력관계로 구축하여 회의자료 작성 및 회무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공지사항, 서안 작성 및 게시 등 주요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각 분과 국장은 집행위원과 협력하여 소속 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총학생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확대회의에 보고한다.

⑥ 상임고문 및 자문 위원은 경험과 식견을 통해 총학생회 운영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25조 (각 분과위원회 직무 2018.04.04.)

① 재무위원회는 총학생회 재정과 회계를 관리하고, 타 분과위원회에 귀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를 거쳐 관장하며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② 기획 위원회는 총학생회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월별 및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행사 기획업무를 관장한다.

③ 조직 위원회는 대내외적인 조직 극대화를 위해 각 학생회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모든 행사 진행에 대한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와 관련된 대외적인 조직 업무와 실행 기획업무 등, 동아리 운영에 관련된 신규 승인, 갱신 관리 감독 등, 학교 및 일반사회 조직과 총학생회 관련된 대내외적인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④ 홍보미디어위원회는 총학생회 행사 홍보 및 게시판 관리, 각 학과 학생회 행사 및 세미나 홍보 지원 및 정보교류 등에 관련된 홍보 업무를 관장하며, 대내외적 홍보 및 관리 게시는 대외협력위원회와 협조하여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⑤ 학술위원회는 대내외적인 권익신장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학문탐구와 각 학과의 봉사활동 동아리의 지원 업무로 폭넓은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업무 및 총학생회 교지 발행을 관장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학교의 협조업무 등 일반사회조직과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수행 및 취업 등 정보를 수집하여 홍보위원회와 협조 후 게시 및 교류를 관장한다.

⑦ 졸업준비 위원회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권익과 홍보, 앨범 제작 등 졸업준비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며, 홍보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와 협조하여 총동문회 홍보를 관장한다.

⑧ 법사. 윤리위원회는 본 회칙, 직무 세칙, 확대회의 운영세칙, 중앙 선거 관리 규정, 기타 제반 규정 등, 심의를 담당하며, 사이버공간 또는 회원 상호 간 법률적 유권해석 필요시 회원 상호간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윤리적 심의를 의결하는 업무와 성숙한 질서유지를 위해 법무를 담당한다.

제26조 (집행위원, 운영위원, 선거 관리 위원 책임 등 2018.04.04.)

① 집행위원, 운영위원, 선거 관리 위원은 운영상의 제반 규정 및 총학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총학생회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집행위원은 맡은 직무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총학생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책임을 갖는다.

③ 집행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 운영의원, 선거 관리 위원은 소속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를 진다.

⑤ 전항에 따른 출석은 위임에 따른 대리인 출석을 포함하며, 대리출석은 연속 2회, 임기 중 3회 허용으로 제한한다. 이와 같이 대리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임기 내 의결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 (2023.03.04. 개정)

제27조 (집행위원 임기 2018.04.04.)

① 총학생회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집행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29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② 각 학과 학생회장

③ 2항에 해당하는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해당 학과 학생회는 학과 재학생 중 1인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과는 파견 시점까지 운영위원회의결 정족수에서 제외 한다. (2015.02.15. 1차 개정, 2023.03.04. 2차 개정)

제30조 (의장)

①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부의장으로 의장을 보좌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 ① 회칙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 ②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③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학생회비의 의결권
- ④ 본회의 예산 심의. 승인권
- ⑤ 집행위원회의 회계 및 결산 감사권
- ⑥ 부총학생회장 임명 동의권
- ⑦ 총(부) 학생회장에 대한 신임, 불신임 및 탄핵 발의권
- ⑧ 집행위원 업무정지 요구권
- ⑨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학칙에 의한 관련자 징계 요구권
- ⑩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교 당국에 건의권
- ⑪ 본회 회원에 대한 징계권
- ⑫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 위원회(2월 한) 특별위원회 구성권
- ⑬ 기타 총학생회장의 의결 요청사항에 대한 의결 의무

제32조 (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2월, 7월, 9월,12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2.19.)
- ② 임시 회의는 매월 1회 집행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7일 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의결)

- ① 의결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수로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02.15. 1차 개정, 2023.03.04. 2차 개정)

③ 운영위원이 위원회 소집에 무단으로 2회 불참석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며 3회 이상 불 참석 시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된다.

④ 운영위원이 의결을 요하는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 할 경우는 출석과 의결에 대하여 해당 학과 학생회 임원의 대리 참석이 가능하며 대리 참석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총(부) 학생회장의 대리인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정 2015.02.15>

⑤ 학과 회장인 운영위원은 해당 학과 임원 중 1명과 동반 참석이 가능하며 동반 참석자도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02.15>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7일 이내에 의결하며 15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수 위원회

제 34조 (인수위원회 2018.04.04.)

① 매 해년도 차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공고 후,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학생회 임원과 협의하여 업무인수에 제반된 준비를 진행한다. (개정 2022.2.19.)

② 인수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수 위원은 당선자가 지명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③ 인수 위원회는 총학생회비 이월금, 총학 기(경조기 포함), 총학생회 인감, 총학생회 통장, 회비납부 명단(text file 형식), 지출결의서, 감사 결과보고서, 현금출납장, 각 회의록, 총 학생회칙, 비품 및 집기, 전화, 인터넷 명의변경, 총학생회 네이버 카페 관리 양도, 기타 등 보존에 필요한 일체를 인수받는다. (개정 2022.2.19.)

④ 인수 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임기 종료 30일 전부터 말일까지 업무를 인수받는다.

⑤ 총학생회장과 운영 임원은 임기 종료 30일 전부터 차대 당선자 및 인수 위원회에 총학생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차대 당선자 및 인수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과 운영임원이 요청한 자료 및 비품, 집기 일체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인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19.)

제7장 학과 학생회

제35조 (지위) 각 학과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36조 (구성)

학과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한다. 단, 구성된 학과 학생회 임원 명단은 총학생회 사무실에 한부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학과 학생(부)회장)

-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회원을 대표한다.
- ② 학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부재중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학과의 학생회장은 학과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④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으로 승계된다.
- ⑤ 학과 학생(부)회장은 집행 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각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사활동 및 학술활동을 한다.

제39조 (회칙)

- ① 각 학과 학생회는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며, 독립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각 학과의 회칙은 총학생회 사무실에 한 부씩 비치한다.

제40조 (2018.04.04 회계) 본교 학과 학생회는 총학생회 요청 시 회계 내역서를 (1학기, 2학기)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2018.04.04 감사) 본교 학과 학생회는 학교 및 총학생회에서 받은 지원금 및 회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장 지역 학생회

제42조 (구성)

총학생회는 각 지역별 학우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의 지역 학생회를 둘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기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부분 개정 2022.2.19.)

제43조 (지역대표)

지역 학생회는 지역별 학우 모임을 통해 지역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지역대표는 지역 학생회를 대표한다.

제44조 (활동)

지역 학생회는 지역별 학우들의 자치활동을 주관한다.

제45조 (자체규정)

지역 학생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2018.04.04. 회계)

본교에 지역 학생회는 총학생회 요청 시 회계 내역서를 (1학기, 2 학기)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2018.04.04. 감사)

본교에 지역 학생회는 학교 및 총학생회에서 받은 지원금 및 회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장 동아리연합회

제48조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49조 (회장)

연합회장은 동아리 대표자 모임에서 선출되며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0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정한다.

제51조 (2018.04.04. 회계)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는 총학생회 요청 시 회계 내역서를 (1학기, 2학기)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2018.04.04. 감사)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는 학교 및 총학생회에서 받은 지원금 및 회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52조 (재원) 총학생회의 재원은 본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학교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각종 기부금 및 보조금, 수익금을 모두 포함한다.

제53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③ 학생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총학생회장의 승인에 의해 집행한다.

④ 본회의 회비는 승인된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의 연간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잔여금을 학과 학생회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정률 배분할수 있다. 단 제58조의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회비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학생회비의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3.04. 신설)

제54조 (회계연도)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02월 01일부터 익년도 0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 (예산안의 관리 집행)

① 학생회비는 학교가 징수하되 그 관리와 집행은 총학생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 기구의 장이 집행한다.

② 본회의 전체 자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전체 예산안의 1/5 이상을 일시에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총학생회 예산은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중 1명의 계좌로 하며 총학생회 예산의 모든 입·출금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 운영위원 모두에게 계좌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도 계좌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02.05.>

④ 익년도 01월의 경우 1일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총학 행사 등에 관하여서는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와 협의 후 집행해야 한다.

제56조 (예산편성)

① 본회의 예산안은 집행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상정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가 상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 확정된 예산안은 총학생회장이 전체 회원에게 공고한다.

③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본 회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총학생회장은 가 예산

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가 예산은 총예산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예산편성 후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를 집행할 때마다 학생회비 지출 원칙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되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회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 공개한다.

제57조 (결산) 결산은 년 2회 2/4분기, 4/4분기 회계감사 이전에 실시하고, 각 기구 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학과 대표 중 2명을 선출한다. (2018.04.04.)

② 집행부 또는 운영위원회(집행부를 뺀 인원수) 재적 과반수 의결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학과별 회계감사는 학과 감사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총학생회는 학과별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 열람 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 2018.04.04)

④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당해 년 07월(2월~6월 결산)과 익년도 01월(7월~12월 결산)에 총 2회 실시하며, 회계연도 종료 15일 전까지 회계감사 및 운영위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5.>

⑤ 회계감사의 자료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에게 보고한 후 응해야 한다.

⑥ 특별(임시)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⑦ 총학생회장은 각 기구의 결산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선거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는 산하기구로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총학 선관위)와 각 학과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과 선관위)를 둔다.

② 총학 선관위 구성은 본회 운영위원회가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한 각 학과별 회원 1인을 추천하여 총학 선거 관리 위원으로 위촉하며 총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각 학과 선관위의 구성은 각 학과의 회칙에 따른다.

④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집행위원회 담당국에서 주관한다.

제60조 (구성 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정규 선거 때 구성하며 보궐선거 때는 사유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구성하며 정규 선거 때는 매년 11월 중에 구성한다.

제61조(총학 선관위원장)

① 총학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며 선관위원 회의를 주관한다.

② 총학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 관리 위원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며 투표는 오프라인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수로 할 수 있다.

③ 총학 선관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집행위원회에 사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 선임할 수 있다.

제62조 (선관위 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입후보 자격 심사

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

③ 선거 홍보용 유인물의 작성

④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⑤ 선거록을 작성하여 전체 회원에게 보고

⑥ 선거 및 당선 유효 여부 검토

⑦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후 재선거 여부 결정

⑧ 유효 당선인의 결정 및 당선자 확정

⑨ 선거 관리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⑩ 본회 회칙과 선거 관리 시행세칙의 위반 후보에게 경고 조치 및 후보 자격 박탈 권한을 갖는다.

⑪ 선관위원은 후보자 지지 발언 및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⑫ 선관위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선관위 경비) 본회 집행위원회의 선거 관련 편성 예산으로 충당하며 실비 발생에 한정한다.

제64조(임기) 선관위 구성 완료일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일까지 한다.

제65조(소집 및 공고) 선관위 구성 이후 선관위원들은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 관리,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선거 절차에 대한 실무 계획을 수립하여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함께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각 학과 카페 및 밴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선거 시행세칙)

- ①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을 두어 이에 준거한다.
- ② 선거 시행세칙은 선관위, 선거운동, 투. 개표, 당선 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 ③ 선거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과 선거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⑤ 선거 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선거 시행세칙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장 회칙 개정

제67조 (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재적의원 1/2 이상, 회원 1/10인 이상의 연서 발의로 제안한다.

제68조 (절차) 회칙개정은 아래의 개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회칙 개정안 발의
- ② 개정 발의 안 공고(7일간)
- ③ 의견 수렴
- ④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 (15일)이 내 공고.
- ⑤ 회칙 개정 공포
- ⑥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필히 게시한다.

제13장 부칙

제69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 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70조 (직무 세칙 제정)

① 총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직무 세칙을 제정한다.

② 직무 세칙 개정은 제63조에 따라 결정한다.

- 이 상 -